

건 명 :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 방 서

2008. 1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천안상록리조트

시 방 서

1. 일반사항

- 가. 본 시방서는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적용하는 시방서이다.
- 나. 본 공사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가항의 공사에 해당되는 항목만 적용한다.

2. 적용범위

- 가. 본 공사시행 일체를 설계도서와 제반규정에 따라 염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나.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 등 계약관련 서류상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 다.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보다.
- 라. 본 시방서에 내용이 없거나 계약관련 서류내용 등에 대한 기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공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 1) 공사시방서
- 2) 설계도면
- 3) 표준시방서
- 4) 산출내역서
- 5) 승인된 시공도면
- 6) 관련법령 유권해석
- 7) 감독관 지시

4. 설계변경

-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 마. 수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여하한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5. 공해 및 분진방지

-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사전에 비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 나.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협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공사 관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 1) 수급자는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 3) 수급자는 항상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항상 대조하여 관리하고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자재

가. 자재 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검사

-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품질

- 1) 타포린 : 코니탑 KT4202 72 동등이상품
- 2) 인조잔디 : 코니그린 CL1000G5 동등이상품

8. 수급자의 의무

-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 4)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 5)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8)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 10) 수급자는 공사중 민원발생 시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책무를 다한다.
-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2)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인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 3)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시 가설울타리, 목책, 안전보호망,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 4)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5) 현장여건의 특이성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6) 공사현장이 영업을 진행하는 골프장 및 휴양지구인 관계로 이용객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한다.
- 2)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자회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다.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비 정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사기록 및 보고

-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서류 등은 감독관의 필요한 검사와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

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다. 공사보고

- 1) 시공자는 감독관과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별도지정일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공정사진

- 1)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 2)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시 공

가. 기존 인조잔디, 타포린 제거 및 폐기물처리

- 1) 수급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바닥재를 철거하고 폐기물 반출이 용이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 배수로 주변에 접착되어 있는 부분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기반면 보수 및 다짐

- 1) 타포린 포설전 기반면에 대하여 필요시 흙채움등 면정리,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구배를 고려 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다짐시는 세로방향으로 하여 공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다. 타포린 및 인조잔디 설치

1. 타포린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준비

- 1) 시공 부위 확인 및 설치계획 작성
- 2) 표토마감 문제점 확인 점검
- 3) 시공 자재 준비
 - 자재 : 타포린, 인조잔디
 - 부자재 : 접착제

2. 타포린 설치 공사

- 1) 타포린은 T=0.5MM이상으로 한다.
- 2) 폐어웨이에 맞추어 고주파 접착한다.
- 3) 타포린을 편다.
- 4) 타포린 고정 부분을 접착제로 양면 칠한다.
- 5) 접착제 경화 시점에 맞추어 팽팽하게 당겨 붙인다.
- 6) 양생기간을 준다. (약 2~3일)

3. 인조잔디 설치공사

- 1) 타포린 위에 인조잔디를 포설한다.
- 2) 인조잔디를 1/3정도 접는다.
- 3) 우레탄 접착제를 칠한다.
- 4) 접착제의 경화 시간에 맞추어 덮는다.
- 5) 밀대로 민다.
- 6) 0~3M까지는 가위로 죄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겹치기 시공한다.
- 7) 정리 정돈한다.

13. 준 공

1.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수급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현장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준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3. 준공 후 제출도서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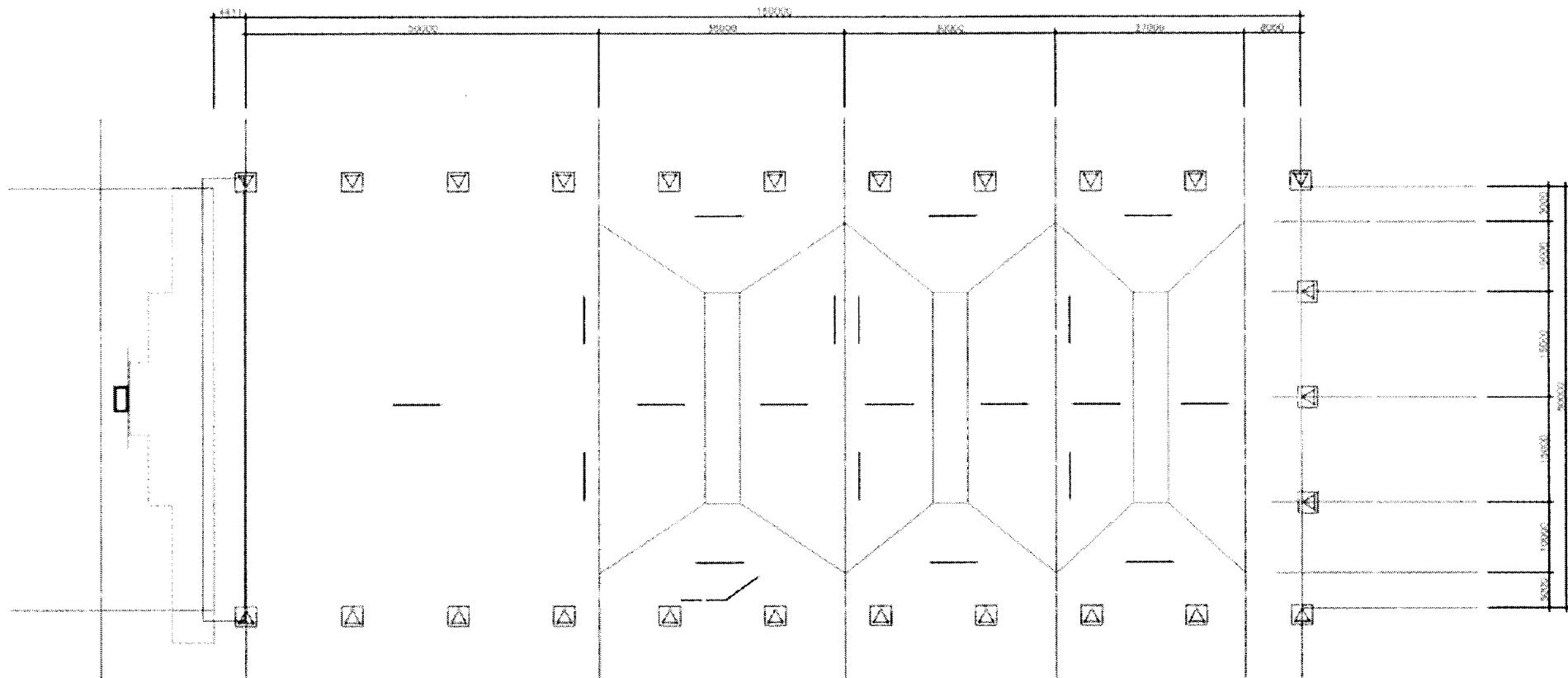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4. 준공제출서류

가. 준공도면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일위대가 , 단가산출서)

다. 준공물량산출서 1부



* 주) 기존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기존잔디, 타포린 설치,
기반보수대접, 타포린설치, 인조잔디 설치로 진행됩니다.



구분	규격	면적(m^2)	비고
	cut 10mm	9.264	

목적:	작성	검토	승인	공사명:	연습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도면명:	인조잔디 포장 평면도	도면번호:	1
날짜:	2008. 10.			시행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천안상록리조트			일련번호:	-